

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

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(☎ 044-201-3763)

▶ 오피스텔과 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전용출입구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지금까지 오피스텔을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(연면적 3천㎡ 이하 제외)하는 경우 주거기능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,

- 앞으로는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피난, 주거기능 보호, 분양성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>주택과 함께 짓는 오피스텔, 전용출입구 없어도 돼

<2014년도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기준 완화>

▶ 추진배경 :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기준 합리적 개선

▶ 주요내용

①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적 설치 가능

▶ 시행일 : 2013.12.